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학교급식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우수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코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료화 (안 제2조)

- 우수 농·축·수산물 :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것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 식품비 :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제조한 구입비

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농·축·수산물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을 구미시내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함. (안 제4조)

라. 지원방법 및 신청의 절차 규정 (안 제6조)

마.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13인이내 (안 제7조)

바. 시장과 교육장 지도·감독 의무화 (안 제9조)

3. 참고사항

- 「학교급식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
- 시·군·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국무총리실)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식품의 안전성과 원산지등에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구미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①시장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담당국장
2. 경상북도구미교육청 담당과장
3. 구미시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
5. 교원 단체
6. 영양사 단체
7. 농민단체
8. 시민단체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